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4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윤봉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찬형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부천 소사구 D 대 166.7m에 관하여 2018. 9. 14.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17. 접수
제91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주고 C은 원고에게 1,000억 원에서 위 매입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을 상대로 C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 소사구 D 대 266.7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9. 20.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310호).

다. C은 2018. 9.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17. 접수 제91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을 상대로 용역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611 판결) 2020. 7. 1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C은 가압류 결정 직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C이 위 가압류 결정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가압류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청구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C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